

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한기영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11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1월 19일

발 의 자 : 한기영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강동길, 김경우, 김재형,
김태호, 김호평, 문병훈,
오중석, 이동현, 이병도,
이승미, 추승우 의원(11
명)

1. 제안이유

- 본 조례는 「지방세법」을 상위법령으로 하는 위임 조례로 목적 사항에 같은 법 시행령을 추가 명시하여 조례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, 주민세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며, 본 조례 중 「지방세기본법」의 위임 사항인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기준 및 교부방법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「지방세기본법」 위임 조례인 「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」로 이관하는 등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근거 법령에 「지방세법 시행령」을 추가하여 명시함(안 제1조)
- 나. 지방세법 상 주민세 관련 조항의 개정 사항을 반영함(안 제8조, 안 제9조, 안 제10조)

다. 「지방세기본법」 위임 사항인 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및 공동재산세 전
출금 교부 절차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(안 제26조부터 안 제2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세법」, 「지방세법 시행령」, 「지방세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세법」 등”을 “「지방세법」 및 「지방세법 시행령」”으로 한다.

제5장제1절의 제목 “균등분”을 “개인분”으로 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세율)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4,800원으로 한다.

제5장제2절의 제목 “재산분”을 “사업소분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재산분”을 “사업소분”으로, “표준세율”을 “각 호의 세율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재산분”을 “사업소분”으로 한다.

제9장(제26조 및 제27조)을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에 관한 적용례) 제5장 제1절의 제목, 제8조, 제5장 제2절의 제목, 제9조,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세법」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5장 주민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1절 <u>균등분</u></p> <p>제8조(세율) 법 제78조에 따른 <u>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1. <u>개인의 세율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<u>시 관할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: 4,800원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<u>시 관할 지역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: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</u></p> <p>2. <u>법인의 세율: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2절 <u>재산분</u></p> <p>제9조(세율)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<u>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</u></p> <p>제10조(신고의무) <u>재산분</u>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세법」 및 「지방세법 시행령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5장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1절 <u>개인분</u></p> <p>제8조(세율) 법 제78조에 따른 <u>개인분의 세율은 4,800원으로 한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2절 <u>사업소분</u></p> <p>제9조(세율)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<u>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.</u></p> <p>제10조(신고의무) <u>사업소분</u>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</p>

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, 지번, 용도, 층수, 건축물의 연면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9장 특별시분 재산세

제26조(특별시분 재산세 교부) 시장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에 균등배분하여 교부한다.

제27조(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절차 등) ① 제26조의 공동재산세 전출금은 특별시분 재산세가 징수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자치구에 교부한다. 다만, 징수금액이 적어 교부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징수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에 정산하여 교부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재산세 전출금을 교부하려는 때에는 관할 구역 안의 구청장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. 이

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, 지번, 용도, 층수, 건축물의 연면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경우 시장은 교부액의 산정기초,
자치구별 내역 등을 작성하여 구
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